

언론의 권위를 지탱하는 두 축은 자유와 그에 합당한 공적 책임에 있다. 자유라는 명분으로 피해를 양산한다면 합당한 권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지난 10년간 언론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구제의 근거법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을 바탕으로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피해구제수단과 조정, 중재라는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피해구제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왔다.

한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뉴스 생산과 유통 방식이 급변하면서 언론보도 활동의 결과물인 기사로 인한 피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피해 확산 속도와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특히 피해 발생은 실시간으로 벌어지는데, 피해구제의 속도는 아날로그 시대와 큰 차이가 없어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과연 기존 피해구제수단과 피해구제절차만으로 현재의 언론 보도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발제문의 문제제기와 개선방안 모색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되는 포털에서 일하는 필자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보도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유형과 속도에 대해 법적 규범이 따라가지 못하는 일종의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느낀다. 체감상 실제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언론중재위에 판단을 구하지 않고 피해를 감내하거나 적극적 해결을 포기하는 것 같다.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해구제의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피해구제수단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불편 중 하나다.

피해구제 속도의 지체 현상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털어 놓는 가장 큰 불만이다. 디지털 기술기반에서는 뉴스의 소비와 피해가 모두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구제는 그렇지 못하다. 항간에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는 LTE 속도로 발생하는데, 피해구제는 PC통신 시절의 전화모뎀 속도에 그친다”는 말이 있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속도가 너무 늦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또

하나 현재 언론중재법에 언급된 피해구제수단이 실제 피해자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구제수단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디테일해지고 있다. 뉴스가 유통되는 디바이스와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피해구제수단이 다양해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포털이 매개한 기사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들이 포털사에 요구해 오는 피해구제 유형은 기사 삭제, 기사 수정(사진 제외), 댓글 삭제, 댓글 차단, 기사배열 제외, 접근 차단, 검색 차단 등 다양하다. 실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결과만 살펴봐도 아날로그 시대에는 없던 이와 비슷한 유형의 피해구제 방안이 도출되고 있다.

발제문 내용은 더딘 피해구제 속도와 피해구제 수단의 다양성 부족이라는 현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어서 크게 공감이 간다. 발제문에 언급된 개선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게시판 등을 통한 댓글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다. 댓글은 보도행위의 결과물인 기사에 속한 부속물로 볼 수 있다. 포털이나 언론사의 경우 온라인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하면 댓글 영역도 함께 사라지는데, 이런 측면에서 댓글을 기사의 부속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댓글도 엄연한 개인의 창작물이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기사가 삭제될 때 댓글 영역이 함께 사라지지만 개별 댓글을 단 사람의 ‘댓글 모아보기’ 페이지에는 해당 댓글을 그대로 남겨 둔다. 개인의 저작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셜 댓글의 경우 포털이나 언론사 기사 댓글 영역에 글을 남길 때 게시자의 SNS 서비스(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같은 댓글이 포스팅된다. 만약 댓글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면 같은 글이 존재하는 SNS 영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댓글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댓글은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블라인드 조치까지 이뤄지고 있어 언론중재법에 의한 피해구제는 제도의 중복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개선방안 중 4번째 사항이다. 조정·중재신청 때 파생된 유사 정보에 대해 특별 판단이나 조정 없이 신속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피해자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전부에 대한 조정·중재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 경계가 애매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의무가 특정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해당 보도를 인용해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변형된 정보의 경우 사업자가 자동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피해구제 청구수단을 다양화하자는 내용에 대해선 동의하는 바이다. 이미 조정·중재 과정에서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없었던 다양한 합의가 도출되고 있어 실제 통용되는 피해구제수단을 명문화하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발제자가 제안한 삭제, 접근차단, 검색차단은 언론중재법에 명문화된 피해구제 청구수단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수단이며 앞서 언급한 피해구제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인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상당한 심리 신청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때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는 필요하며 그 수단은 접근차단, 검색차단과 같은 방식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서 일반 게시물에 대해 적용되는 임시조치의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언론중재법이 보완될 경우 그 수위를 잘 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보도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련해 언론중재법 외에 민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 다양한 관련법이 존재하는 만큼 제안된 개선방안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이어질 때 다른 법과의 조화로운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발제문에도 나와 있듯이 언론중재법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다른 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피해구제의 편의성이나 수단의 강화가 언론의 자유를 해칠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제문에 제기된 개선방안 중 상당 부분은 입법화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